

【 14 】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5. 1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97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법령에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 삭제(안 제6조)
-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규정 삭제(안 제7조)
- 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규정 개정(안 제9조)
- 라. 정화조 등의 청소규정 삭제(안 제13조)
- 마.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 삭제(안 제15조)
- 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규정 삭제(안 제16조)
- 사.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안 제17조)
- 아. 간이 축산 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 삭제(안 제18조)
- 자.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규정 삭제(안 제25조 삭제)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4조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제19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 제9조제1항중 “법 제19조”를 “법 제18조”로, 동조 제2항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분뇨관련”을 “분뇨 등 관련”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 별표 5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8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관련)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01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5조)	50	70	100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 2 제2항, 제10조 제2항)	30	40	50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 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	50	70	100
	나. 준공검사를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00	100	100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사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인자(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1항 제2조, 제27조)	100	100	100
	5.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또는 간이축산 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2 제1항)	50	70	100

적 용 법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6.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제1항)		50	70	1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2항)		30	40	50
8. 분뇨등 관련영업의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법 제35조제3항)		50	70	100
9. 분뇨등 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50	70	1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30	40	5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70	100
12.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70	100
13.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자 및 분뇨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	40	50

적용 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4.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5조)	30	40	50
15.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제1항)	30	40	50
16.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법 제 13조제2항)	50	70	100
17.	축산폐수처리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법 제33조제3항)	50	70	100
18.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 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50	70	100
19.	분뇨등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30	40	50
20.	분뇨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의 2 제2항)	30	40	50
21.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 5항)	50	70	100

적용 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22.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3항)	50	70	100
	23.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3 제2항)	20	30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간이축산폐수정화조</u>”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 '95.2.12) 3. (삭제 : '95.2.12) 4. “<u>가축</u>”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기타 오물 발생원인이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방에 의하다. 5. “<u>가축</u>”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6. “<u>제한지역</u>”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삭제)
<p><u>제4조(기본계획수립)</u>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u>제4조(기본계획수립)</u> ----- 법 제4조 제2항</p> <hr/> <hr/> <hr/> <hr/>
<p><u>제5조(분뇨 수집의무 지역 및 제외지역 선정)</u></p> <p>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오지, 벽지 등 분뇨수집, 융반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생략)</p>	<p><u>제5조(분뇨 수집의무 지역 및 제외지역 선정)</u></p> <p>①법 제18조제1항 -----</p> <hr/> <hr/> <hr/> <p>법 제18조제2항 -----</p> <hr/>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p> <p>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를 위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 배근, 배관, 여재재치, 콘크리트 타설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등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 업자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둘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삭제)
<p>제7조(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①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처리용량 200m³이상의 시설은 월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m³미만 100m³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m³미만의 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삭제)

현 행	개 정 안
<p>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 대행자</p> <p>2.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③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 설비 등 정화기능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당시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등의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절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법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p>	<p>제9조(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① 법제18조</p> <p>-----</p> <p>-----</p> <p>-----</p> <p>② 법제18조제4항</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2. 정화조오니 <u>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u> 의 청소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 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 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u>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u>
3.(생략) ③~⑥(생략)	3.(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제1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대행) ①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할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u>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 ②~③(생략)	제1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대행) ①----- 법 제18조제1항 ----- <u>분뇨통 관련</u> ②~③(현행과 같음)
제13조(정화조 등의 청소)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삭제)

현 행	개 정 안
<p>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 저류조의 최종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p> <p>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 시설로서 각종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啐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 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폐조의 스啐 및 침전오니 등(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하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p> <p>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 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 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p> <p>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가. 국·공립 연구기관</p> <p>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p> <p>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 한 측정 대행자</p> <p>④ 정화조 등을 청소한 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동법시행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 3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의 여부를 청소완료한 다음 날까지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개선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삭제)</p> <p>① 고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에 있어 해당 지역이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 타설, FRP등의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임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6조(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①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p> <p>1. 정기점검</p> <p>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 1회 이상</p> <p>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p> <p>2. 방류수 수질측정</p> <p>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p> <p>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p> <p>3.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4.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 대행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제1항 제2호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 	
<p>제18조(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p> <p>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의 정화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규칙으로 그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 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삭제)
<p>제25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하여 수집, 운반 또는</p>	(삭제)

현 행	개 정 안
<p>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교수는 법 제35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불일수 있다. 다만, 전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교수는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 기준 (조례제17조관련)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과금액(만원)	부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u>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u>				<u>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u>	<u>50</u>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u>수수질기준을 위반한</u>	<u>70</u>
(신고 대상)의 방류수수				<u>자 (법 제5조)</u>	<u>100</u>
<u>질기준을 위반한 자</u>					
(법 제5조)					
가. 오수정화 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	<u>100</u>	<u>200</u>	<u>300</u>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 만을 초과	<u>300</u>	<u>400</u>	<u>500</u>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 만을 초과	<u>500</u>	<u>600</u>	<u>700</u>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u>700</u>	<u>800</u>	<u>1,000</u>		
(2) 1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	<u>200</u>	<u>300</u>	<u>400</u>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 만을 초과	<u>400</u>	<u>500</u>	<u>600</u>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 만을 초과	<u>600</u>	<u>700</u>	<u>800</u>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u>800</u>	<u>900</u>	<u>1,000</u>		

현 행			개 정 안				
부과 대상	부과금액			부과 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m ³ 미만 인정화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m ³ 이상 인정화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1) 밤류수수질기준 20% 미만을 초과	100	200	300				
(2) 밤류수수질기준 20% 이상 50%미만을 초과	300	400	500				
(3) 밤류수수질기준 50% 이상 100%미만을 초 과	500	600	700				
(4) 밤류수수질기준 100% 이상을 초과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 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10조 제2항)				2. 오수정화시설, 합병정 화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를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제10조 제2항)	30	40	50
가. 오수정화시설	200	500	1,000				
나. 정화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				3. 오수처리시설, 축산폐 수처리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준			

현 행			개 정 안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11조, 26조)				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법 제12조 제26조 제33조제2항)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하는 경우	50	70	100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200	200	2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자	100	100	100
(2) 오수정화시설	300	300	3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사용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	800	8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법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달진자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및 제27조)				4.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달진자 (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 2제1항, 제22조, 제27조)	100	100	100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500	500	50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나. 오수정화시설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5.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3조의2 제1항)	50	70	100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1) 처리용량 200m ³ 이상 경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m ³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 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10m ³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 10m ³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300	500	800				

현 행			개 정 안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3) 축산폐수정화시설 (허가대상)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 인원 500 인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소독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 설 관리일지를 작성 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 제1항)	50	70	1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제2항 제4항)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 제2항)	30	40	50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300	500	800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 한분뇨관련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8. 분뇨통관련영업의 영 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 건을 위반한 자(법 제 35조 제3항)	50	70	100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 기한을 위반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부득이한	100	300	500				

현 행				개 정 안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사유로 인한 경우 <u>제외)</u>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 을 받은 분뇨관련업자	300	500	1,000	9.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법 제35조의3제1항)	50	70	1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2항)	30	40	5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3항)	50	70	100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2. 기술관리인 등의 교 육을 받게하지 아니 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70	100
13. 장부를 기록, 보존하 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300	500	1,000	13. 분뇨 또는 축산폐수 를 재활용하는 자, 분 뇨등 관련영업자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 제44조)	30	40	50
14. 휴업, 폐업등의 신고 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300	500	1,000	14. 분뇨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또는 정화조제조업자로서 휴업·폐업 등의 신고	30	40	5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설계·시공업자 (법 제45조)				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5조)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15. 사업자,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분뇨등 관련영업자, 설계·시공업자, 정화조제조업자로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 제1항)	30 40 50
				16.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법 제13조 제2항)	50 70 100
				17. 축산폐수처리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자 (법 제33조 제3항)	50 70 100
				18.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 금지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50 70 100
				19. 분뇨등 관련영업 또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과 관련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법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	30 40 50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20. <u>분뇨등관련영업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의2 제2항)</u>	30	40 50
			21. <u>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8조 제5항)</u>	50	70 100
			22. <u>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3항)</u>	50	70 100
			23. <u>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3제2항)</u>	20	30 50

●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소관부처 : 환경부

制定	1991. 3. 8	法律第4364號
改正	1993. 12. 27	法律第4656號
	1994. 1. 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7. 3. 7	法律第5301號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律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清潔히 하고 水質污染을 감소시킴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12. 27, 97. 3. 7)

1. “汚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化粧室·沐浴湯·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淨化槽의 清掃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畜産廢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을 말한다.
4. “畜産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畜産廢水가 排出되는 施設 및 場所등으로서 畜舍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汚水淨化施設”이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建物 기타 施設物에 設置하는 施設을 말한다.
6. “合併淨化槽”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와의 施設을 말한다.
7. “單獨淨化槽”라 함은 水洗式化粧室에서 나오는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畜産廢水處理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소관부처 : 환경부

制定	1991. 3. 8	法律第4364號
改正	1993. 12. 27	法律第4656號
	1994. 1. 5	法律第4714號(環境改善特別會計法)
	1997. 3. 7	法律第5301號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清潔히 하고 水質污染을 감소시킴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12. 27, 97. 3. 7>

1. “汚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化粧室·沐浴湯·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淨化槽의 清掃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畜産廢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을 말한다.
4. “畜産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畜産廢水가 排出되는 施設 및 場所등으로서 畜舍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污水淨化施設”이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建物 기타 施設物에 設置하는 施設을 말한다.
6. “合併淨化槽”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외의 施設을 말한다.
7. “單獨淨化槽”라 함은 水洗式化粧室에서 나오는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畜産廢水處理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第39編 環 境 第3章 農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施設을 말한다.

9.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施設을 말한다.

10. “畜產廢水公共處理施設”이라 함은 集團的으로 家畜을 飼育하는 地域의 農家에서 발생하는 農產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施設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農產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糞尿處理施設 및 農產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糞尿 및 農產廢水로 인한 水質污染의 防止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3·7>

②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管轄區域안의 糞尿·및 農產廢水의 處理社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國家는 糞尿 및 農產廢水의 처리에 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하며,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糞尿 및 農產廢水의 處理社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第4條 (糞尿 및 農產廢水의 廣域管理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糞尿 또는 農產廢水를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糞尿處理施設 및 農產廢水公共處理施設을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사는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糞尿 및 農產廢水의 處理社業의 調整를 함께 있어서 糞尿處理施設 및 農產廢水公共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도록 勸告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保全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수 있다. 이 경우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7·3·7)

- 第4條의2 (糞尿 및 畜産廢水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은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3·7)

- 第5條 (放流水水質基準) ①污水淨化施設·合併淨化槽·單獨淨化槽·糞尿處理施設·畜產廢水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안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基準을 정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改正 97·3·7)

- 第6條 (他人의 土地안의 出入等) ①市長·郡守·區廳長 또는 그 命令에 의하거나 委任을 받은 者는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產廢水公共處理施設에 관한 調査·測量 및 工事を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거나 特別한 用途가 있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樹木 기타의 障碍物을 제거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土地의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障碍物 등을 제거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인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出入할 수 없다.
- ④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出入 또는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豚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第7條 (損失補償)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사용이나 障碍物의 제거 또는 變更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을 할 때에는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3·7>

第8條 (土地등의 收用· 사용)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處理施設 또는 豚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의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適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21條第2項 및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은 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第2章 汚水의 처리

第9條 (污水淨化施設의 設置) ①大統領令이 성하는 규모이상의 建物 기타 施設物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 또는 公동으로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汚水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 전인 경우에 한한다)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農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2.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第1號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汚水淨化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3·7]

第9條의2 (合併淨化槽의 設置) ①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규모미만의 建物 기타 施設物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 또는 公同으로 合併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汚水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併淨化槽를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第1號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合併淨化槽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併淨化槽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併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3·7] [[施行日 : 附則 第2條 参照]]

第10條 (單獨淨化槽의 設置) ①水洗式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淨化槽는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水洗式化粧室에서 分離된 汚水를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以下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併淨化槽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雨水·污水分流式 下水道를 통하여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 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獨淨化槽를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單獨淨化槽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獨淨化槽를 設置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3·7]

第11條 (汚·廢水併合處理에 관한 特例) ①동일한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와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廢水를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水質污染防止施設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併合處理하는 事業場은 이 法에 의한 汚水淨化施設·合併淨化槽·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각각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污染防止施設에서 併合處理되는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로 본다.

[全文改正 97·3·7]

第12條 (污水淨化施設등의 竣工檢查)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併淨化槽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者가 그 設置 또는 變更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檢查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查의 申請 및 檢查方法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7·3·7]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13條 (污水淨化施設의 設計 · 施工) ①污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污水處理施設의 設計 ·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 · 施工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污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污水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污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污染防止施設業을 登錄한 者가 污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國內에서 處理技術상 一般화되어 있지 아니한 污水淨化方法을 이용하는 경우
로서 試驗用 施設(國 · 公立試驗機關 또는 大學附設環境研究所 기타 環境部長官이 인정하는 研究 · 試驗機關의 試驗을 거친 것에 한한다)을 設置하는 경우
-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污水淨化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그 施工를 監理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 · 3 · 7)

第13條의2 (合併淨化槽 및 單獨淨化槽의 設計 · 施工) ①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合併淨化槽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을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污水處理施設의 設計 ·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 · 施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에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造業者가 製造한 合併淨化槽 또는 單獨淨化槽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污水處理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合併淨化槽 또는 單獨淨化槽을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合併淨化槽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의 參여하에 施工를 하게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 · 3 · 7)

第14條 (污水淨化施設등의 운영 · 관리) ①污水淨化施設 · 合併淨化槽 또는 單獨淨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廉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化槽(이하 “污水處理施設”이라 한다)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汚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汚水를 汚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汚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汚水處理施設에 流入되는 汚水를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排出하는 행위
3. 汚水處理施設에서 처리된 물을 汚染되지 아니한 물로 稀釋하여 放流하는 행위

②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放流水의 水質自家測定 및 內部清掃등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放流하게 되는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할 사항 및 申告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⑤市長·郡守·區廳長은 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施設의 內部清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3·7)

第14條의2 (污水處理施設의 改善命令) ①市長·郡守·區廳長은 污水處理施設이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대체 또는 閉鎖등 필요한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를 받은 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が 施設의 개선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污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③第2項의 规定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3·7)

第15條 (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规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1의 營業을 행하는 者에게 그 주방(廚房)·沐浴湯等에서 발생하는 污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1. 觀光振興法 第3條의 规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또는 觀光客利用施設業
2.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规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또는 調理販賣業
3. 公衆衛生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宿泊業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簡易污水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6條 (公衆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市長·郡守·區廳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化粧室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化粧室을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3·7>

第17條 (特定工產品의 사용제한등)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工產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污水의 水質을 현저히 惡化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당해 工產品의 販賣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3·7>

(全文改正 93·12·27)

第3章 糞尿의 처리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을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规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奧地·僻地等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規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 · 黃尿 및 畜產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

③化粧室이 設置되어 있는 車輛 · 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化粧室을 設置 · 관리하는 者는 그 化粧室에서 排出되는 黃尿를 스스로 收集 · 運搬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收集 · 運搬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黃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 · 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市長 · 郡守 · 區廳長은 黃尿를 收集 · 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黃尿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集 · 運搬된 黃尿에 대하여 黃尿處理施設의 운영중단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3·7〕

第19條 (黃尿의 처리) ①第1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黃尿의 收集 · 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②黃尿을 收集 ·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黃尿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場所의의 場所에 黃尿를 함부로 버리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收集 · 運搬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生活環境에 被害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黃尿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3·7〕

第20條 (黃尿등의 再活用) ①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黃尿 또는 畜產廢水를 再活用의 目的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 · 郡守 ·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尿를 사용하거나 第24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產廢水 排出施設 設置許可 또는 申告를 한 者가 畜產廢水를 再活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再活用의 目的으로 黃尿 또는 畜產廢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 및 관리기준에 따라 再活用施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3·7)

第21條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① 糞尿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第22條 (糞尿處理施設의 設計·施工) 糞尿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3條 (糞尿處理施設의 운영·관리등) ① 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糞尿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糞尿를 처리하여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放流하는 행위
2. 糞尿를 물로 稀釋하여 放流하는 행위. 다만, 糞尿處理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糞尿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을 自家測定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糞尿處理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3·7)

第4章 畜産廢水의 처리

第24條 (畜産廢水排出施設에 대한 設置許可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를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

第39編 環 境 第3章 廉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다. <改正 97·3·7>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產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외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第25條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등) ①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한 者와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畜產業者”라 한다)가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함에 있어서는 당해 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하로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單獨 또는 共同으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여야 한다. 다만,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외의 方法으로 畜産廢水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3·7>

②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第25條의2 (畜産團地등에 設置하는 共同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承認등)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하고자 하는 畜產業者로서 畜産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에 同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置전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本條新設 93·12·27)

第25條의3 (權利·義務의 承繼) ①畜產業者가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的 合併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人·相續人 또는 合併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 또는 申告에 따른 畜産業者の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7·3·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3·7>

[本條新設 93·12·27]

第26條 (畜産廢水排出施設등의 竣工検査) 畜産業者は 畜産廢水排出施設과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全文改正 93·12·27]

第27條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計·施工)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에 의하여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스스로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27, 97·3·7>

第28條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의 管理等) ① 畜産業者は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 畜産業者は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부득이한 사유로 正常運營할 수 없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7·3·7>

③ 畜産業者は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의하여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이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管理된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畜産業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第29條 (排出賦課金) ① 環境部長官은 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39編 環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物質의 종류·排出期間·排出量등을 算定基準으로 하는 排出賦課金을 납부할 것을 命해야 한다. 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93·12·27, 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同法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3·12·2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

⑤環境部長官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⑥環境部長官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품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 97·3·7〉

第30條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의 小規模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中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全文改正 97·3·7)

第31條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운영 · 관리등) ①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畜産廢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畜産廢水를 처리하여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放流하는 행위
 2. 畜産廢水를 물로 稀釋하여 放流하는 행위. 다만, 畜産廢水處理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②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을 自家測定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 ·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③環境部長官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되는 때에는 해당 市長 · 郡守 · 區廳長에게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97·3·7)

第32條 (畜産廢水의 처리 및 費用負擔등) ①市長 · 郡守 ·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를 收集 · 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 · 郡守 ·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 또는 運搬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의 收集 · 運搬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③市長 · 郡守 · 區廳長은 畜産廢水를 收集 · 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되는 畜産廢水를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 施設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는 費用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유지 · 관리 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7·3·7)

第39編 環境 第3章 農業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33條 (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設置등) ①第24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畜產廢水排出施設의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畜產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그 畜產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처리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簡易畜產廢水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簡易畜產廢水淨化槽設置외의 方法으로 畜產廢水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12·27,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畜產廢水淨化槽를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設置申告를 하여야 하며, 그 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檢查를 받아야 한다. <新設 93·12·27, 97·3·7>

③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畜產廢水淨化槽 設置외의 方法으로 畜產廢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收去·運搬이 용이한 場所에 賯留槽를 設置하되,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7·3·7>

第33條의2 (簡易畜產廢水淨化槽의 관리등) ①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畜產廢水淨化槽를 設置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과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簡易畜產廢水淨化槽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畜產業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3·7>

(本條新設 93·12·27)

第34條 (家畜飼育의 제한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을 위하여 특히 需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한 地域을 지정하여 그 地域안에서는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畜舍의 移轉을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이상의 猶豫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財政的 지원·敷地斡旋등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5章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處理關聯營業의 許可 등

第35條 (糞尿等關聯營業) ①糞尿 또는 畜産廢水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나 合併淨化槽 및 單獨淨化槽(이하 “淨化槽”라 한다)의 清掃를 業(이하 “糞尿等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資本金·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糞尿等關聯營業의 業種區分과 营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糞尿收集·運搬業

糞尿(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营業

2. 糞尿處理業

糞尿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를 最終的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营業

3. 淨化槽清掃業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淨化槽을 清掃하고, 淨化槽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营業

4. 畜產廢水收集·運搬業

畜產廢水(畜產廢水處理施設의 清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를 收集하여 畜產廢水公共處理施設로 運搬하는 营業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되는 糞尿를 효율적으로 收集·運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께 있어 营業區域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汚水・糞尿 및 農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 및 變更申告의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7·3·7)

第35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①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の 合併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營業者の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第36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3·7)

第35條의3 (糞尿等關聯營業者の 준수사항) ①糞尿等關聯營業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糞尿等關聯營業者(從事者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3·7)

第36條 (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糞尿等關聯營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27, 9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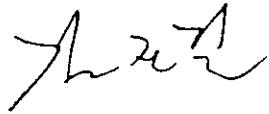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期產者
2.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廢棄物管理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糞尿等關聯營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37條 (許可의 取消 및 課徵金賦課 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等關聯營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 호

1999년 4월 26일 (월)

차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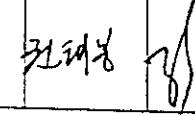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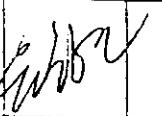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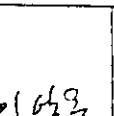
양주군 규칙	제 1094호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중 개정 규칙	2
양주군 규칙	제 1095호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중 개정 규칙	4

고시

양주군 고시	제 1999-31호	유수인용(주수) 허가 사항 고시	11
양주군 고시	제 1999-32호	지적 측량 기준 절성과 고시	12

공고

양주군 공고	제 1999-138호	양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5
양주군 공고	제 1999-144호	양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6
양주군 공고	제 1999-145호	양주군 폐기물 관리 대로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47호	양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중조례(안) 입법 예고	17
양주군 공고	제 1999-167호	도시 계획시설 결정 고시	18

회				
---	---	---	---	---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35 호

공 고

양주군 공고 제1999-138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법예고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에서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재치, 콘크리트 타설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함.
 -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에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청소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라.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하는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 FRP 등의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 마.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축산폐수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방류수 수질측정을 하는 규정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현장 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함.
 - 사. 동법률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기준을 1차에서 3차시까지 세부기준을 정하여 위반 횟수별로 부과하는 환경부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 아.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하는자는 영업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하여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상위법의 규제완화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5.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4호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99. 2. 8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등 법령에 근거하여 규제해 오던 청결·유지등 대청소 실시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 기준 및 지도·감독,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등을 규정한 양주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증 법령과 중복 또는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군수는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계도하고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중복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 나.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자기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시에는 설치승인 신청서에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법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폐지함.
 - 다.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동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 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고,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허가조건 준수여부,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폐기물처리에 수반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항으로 폐지함.
 -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매년 1월 말까지 폐기물처리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된 사항으로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 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0-2251)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양 주 군 보

제 135 호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5호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
2. 개정취지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자합.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 및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합.
 -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한 규정을 제지함.
 - 2)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3항(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폐지에 따라 "별표1의" 5호의 법 제24조 제3항은 폐지함.
 - 3) 사업장폐기물 발생액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가 1차에서 3차까지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인 것을 위반회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5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0-2251)
 - 1) 여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 3)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47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양 주 군 보

제 135 호

1. 조례제명 :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완화한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 및 환경부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3. 주요내용
 - 가.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하는 세부설치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나. 공중화장실을 1일 3회이상 청소·소독·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는 세부 유지·관리기준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다. 공중화장실을 불결하게 유지하거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개선·청결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폐지함.
 - 라. 공중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료화장실 승인 규정과 유료화장실을 승인받은 자의 준수사항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4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51-820-2254-5. 오수관리담당부서)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양주군 공고 제1999-167호

1. 의정부시 고시 제1996-34호(96. 6. 17)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증 도로(증로 1-9호선)에 대하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에 따라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을 변경코자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란 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군청 도시과, 장흥면사무소와 경기도북부출장소(도로교통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란기간내 서면(주소, 성명, 단체명, 의견내용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일
양 주 군 수

- 가. 공란 기간 : '99. 4. - '99. 5. (신문공고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나. 공란 장소

양주군청 도시과(0351-820-2351-2) 및 장흥면 사무소(0351-820-2671) 경기도북부출장소 도로교통과(0351-870-2626)

- 다. 변경 사유
 - 도로확장 및 포장 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 변경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994. 1. 6]
조례 제1481호]

(개정 1995. 1. 12 조례 제1520호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이축산폐수정화조”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95. 1. 12)
3. (삭제 '95. 1. 12)
4.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토끼,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조류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6.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분뇨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축산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비·운영비등은 해당 시·군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 4 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5 조(분뇨수집의무지역 및 제외지역 선정) ①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전지역을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오지·벽지등 분뇨수집·운반·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6조(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군수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를 위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등 군수가 지정하는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등 입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7 조(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 200m³이상의 시설은 월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m³미만 100m³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m³미만의 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대행자
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③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 설비등 정화기능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당시에 대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등의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삭제 1995. 1. 12)

- 제 9 조(분뇨의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등) ①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②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오니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위생처리장 처리비

분뇨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25원씩 분뇨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때에는 원단위는 첼사한다.

제8편 환경 보호 양주군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③ 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사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 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수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투입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 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 할 수 있다.

제12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의 구비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화조등의 청소)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면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저류조의 최종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종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등을 제거한후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폐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등(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오수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 이전에 실시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국·공립 연구기관
 - 나.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
- ④정화조등을 청소한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청소완료한 다음날까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개선명령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4조(축산시설의 관리)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 규모 및 축산폐수 처리등의 실태조사로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①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지역이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여정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여재배치, 콘크리트타설, FRP등의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월1회 이상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2. 방류수 수질측정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

3.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하고 과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 제1항 제2호의 방류수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축정대행자

제17조(배출부과금등의 부과기준) 법 제29조, 제37조 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정금·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간이축산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증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의 정화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규칙으로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19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제한지역) ①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학습 및 인공수정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
4. 농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1마리의 소, 달, 돼지 및 5수 이하의 가금류

②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등) ①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사육지 위치도
3. 사업계획서

②군수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10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밀조사 필요시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내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④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향시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2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21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23조(축사이전 조치등) 군수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에 필요한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한지역외의 지역) 제20조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악취와 유해 해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5 장 분뇨관련 영업허가등

제25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하여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분뇨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조(분뇨관련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등에 관한 사항
3.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등의 이행여부

제27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업무의 위탁등) ①군수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0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운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1. 6 조례 제1481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유료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변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이 조례에 의거 승인을 받은것으로 본다.

제 4 조(가축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1.12 조례 제1520호)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사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법 제5조)			
가. 오수정화 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	100	200	300
(나)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	300	400	500
(다)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	500	600	700
(라)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	200	300	400
(나)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	400	500	600
(다)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	600	700	800
(라)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	800	900	1,000
나. 정화조			
(1)처리용량 10m ³ 미만인 정화조	100	200	300
(2)처리용량 10m ³ 이상인 정화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1)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	100	200	300
(2)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	300	400	500
(3)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	500	600	700
(4)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초과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2항, 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	200	500	1,000
나. 정화조	100	200	500

(추 2)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법 제11조, 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			
(1)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200	200	200
(2)오수정화시설	300	300	300
(3)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사용			
(1)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500	500	500
(2)오수정화시설	800	800	800
(3)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수질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간자(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및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	800	800	8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1)처리용량 200m ³ 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m ³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1일 처리용량 5m ³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m ³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m ³ 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 제2항,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300	500	800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업자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제8편 환경보호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2.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 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자 (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 (주) 1. 위 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단을 적용한다.

(별표 6)

가축사육제한지역

1. 도시계획지역 중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장흥국민관광지내
3. 자연공원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집단시설 지구내

- 개정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1999.4.20~5.10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

□ 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97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법령에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오수정화시설 등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 삭제(안 제6조)
-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 규정 삭제(안 제7조)
- 다.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규정 개정(안 제9조)
- 라. 정화조 등의 청소규정 삭제(안 제13조)
- 마.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규정 삭제(안 제15조)
- 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규정 삭제(안 제16조)
- 사.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안 제17조)
- 아. 간이 축산 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규정 삭제(안 제18조)
- 자.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규정 삭제(안 제25조 삭제)